

	<h2>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</h2>	표준번호	교무행정 6-14-1
		제정일자	2012. 5.16
		개정일자	2018. 2.12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60조에 규정된 시간제등록생의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지원자격)** 시간제등록생의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로 한다.

**제3조(선발)**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별로 선발하며, 선발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 
다만, 직전학기 수강자가 계속 등록을 원하는 경우 특별한 전형절차 없이 합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.

**제4조(모집인원)** 시간제등록생의 모집인원은 정원 외로 하며, 학과별 모집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.

**제5조(등록 및 수강신청)** 전형에 합격한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선발 취소)** 다음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입학지원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
2. 전염병 및 기타 질환으로 수학에 지장을 주는 자

**제7조(교육과정 운영 등)** ①시간제등록생의 교과과정은 해당학년도 전일제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한다.

②학점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

③학력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제출한다.

④총장은 학점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국교육개발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이수학점)** 시간제등록생은 매학기 12학점, 연간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.

**제9조(납입금)** 시간제등록생의 납입금은 신청학점을 기준으로 책정하며, 이에 관한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0조(수강신청 변경)**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 단, 수강신청후 합,폐강 및 시간표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소정기간 내에 교학지원처의 확인을 거쳐 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 한다.(신설 2018.2.12)

**제11조(성적관리)** 시간제등록생의 성적관리는 학년표기 없이 취득년도, 학기, 이수과목 및 취득학점을 표기하며, 해당학기 종료 후 본인에게 통지하고 본 대학에서 관리한다.(조변경 2018.2.12)

**제12조(학적관리)** 시간제등록생의 학적관리는 별도로 관리한다.(신설 2018.2.12)

**제13조(학적변동)** 시간제등록생은 휴학, 복학, 수료, 재입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.(신설)

2018.2.12)

**제14조**(학위수여) 학위수여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, 동법시행령 제15조 제4항, 제16조, 동법시행규칙 제14조, 제16조 및 학칙 제54조에 의하여 수여한다.(조변경 2018.2.12)

**제15조**(주관부서) 시간제등록생 주관부서는 평생교육원으로 한다.(신설 2018.2.12)

**제16조**(준용) 이 규정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(조변경 2018.2.12)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(2018.2.12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

